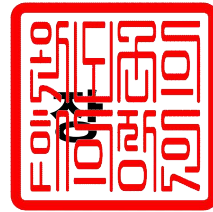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27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 재 선 의원
3. 개정이유
 -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4. 주요내용
 -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 -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(안 제5조)
-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(안 제6조)
- 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(안 제7조)

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5. 27. ~ 2024. 6. 1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길”이란 황토, 자갈,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.
3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맨발걷기길 조성 장소)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3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4.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
 -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걷기길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유지관리
3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
4. 맨발걷기 관련 문화·예술·학술 사업
5.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
6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)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·보수할 경우 보행로의 일부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.

②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·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